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89

발의연월일: 2021. 6. 15.

발 의 자:이종성·김영식·이종배

서일준 · 김용판 · 강기윤

정찬민 · 정운천 · 김예지

안병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후보자 기탁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금액을 정하고 있고,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득표율 10%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,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에게 기탁금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도 작용될 수 있음.

이에 청년 또는 장애인 (예비)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%로하고,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전액을,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여 청년·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57조제1항제1호 등).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34세 이하 후보자(이하 이 장에서 "청년후보자"라 한다)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보자(이하 이장에서 "장애인후보자"라 한다)의 기탁금은 해당 선거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한다)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②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에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7조제1항제1호가목 중 "15"를 "15(청년후보자 또는 장애인후보자는 100분의 10)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미만"을 "미만(청년후보자 또는 장애인후보자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 2항 중 "제56조제3항"을 "제56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6조제1항 각 호"를 "제56조제1

항"으로 한다.

제271조제3항 중 "제56조제3항"을 "제56조제4항"으로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제1항 단서·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아 혅 第56條(寄託金) ① --第56條(寄託金)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 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예비후 -----. <후단 삭제> 다 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 만. 34세 이하 후보자(이하 이 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장에서 "청년후보자"라 한다) 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 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보자(이하 이 장에서 "장애인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단서 보자"라 한다)의 기탁금은 해당 신설> 선거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 한다)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1. ~ 6. (생 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<신 설>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 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해 당 선거 기탁금에서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

#### ② · ③ (생략)

- 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관할 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 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 게 반환한다.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  - 1. 대통령선거, 지역구국회의원 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.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 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 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 액
    - 나.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<u>미만</u>을 득표한 경우에 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

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
<u>야 한다.</u>
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
같음)
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
1
가
<u>15(청년후보자</u>
또는 장애인후보자는 100
<u>분의 10)</u>
_
나
- 미만(청년후보자 또는
장애인후보자는 100분의 5
이상 100분의 10 미만)

다. (생략) 다. (현행과 같음)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 ② 제56조제4항----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 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,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,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 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 다.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 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제56조제1항-----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 $\bigcirc$ 

여는 제261조제10항을 준용한

다.